업무인계 · 인수지침

제정 2012. 8.22 개정 2020. 9.24 시행 2020. 9.25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직원이 인사이동·직제개편 등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 그 담당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·방법·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9.24.>
- 제2조(인계인수서 작성) ①직제규정 제12조에 따른 부서장(파트장을 포함한다, 이하 "부서장"이라 한다)이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지침에 의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해당 직에 새로 보직된 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부서명만 변경된경우 등 업무 변동이 없어 인계·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의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20.9.24.> ②인계인수 기준일은 인계자의 근무상 변동일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준일을 전월 말 또는 당월 말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9.24.>
 - ③궐위, 후임자 미정 등 사유로 인하여 해당 보직이 공석일 때에는 직제규정 제13조의2에 의해 해당 직을 직무대행 하는 자를 제1항의 부서장으로 본다. <개정 2020.9.24.>

- 제3조(인계인수서 내용) ①인계인수서의 서식 및 내용은 별지1과 같다.
 - ②금전, 물품의 출납, 기타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전항의 규정 외에 인계 당일까지의 회계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재한 후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그 현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9.24.>
 - ③제2항의 경우 인수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써 보완하여야 한다.
- 제4조(인계인수 절차) ①업무의 인계·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전자 결재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, 확인자 순으로 결재자를 지정하여 등록한다. <개정 2020.9.24.>
 - ②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인계인수서는 인계자, 인수자, 확인자가 각 각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 연서하여 확인한다. <신설 2020.9.24.>
 - ③제2항에 따라 확인된 인계인수서는 인수자 부서에서 보관하며, 인계자는 이를 위해 보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다. <신설 2020.9.24.>
- 제5조(확인자) 각 인계자에 따른 확인자는 별지2와 같다.<개정 2020.9.24.>
- 제6조(인계자 및 직원의 책임) ①인계자는 인계인수서 작성에 있어 부속서류 내용을 검토하고 현물을 실사한 후 사실 그대로 인계하여야

하며 재산의 과부족 사항, 예산 집행액의 과부족 등 미결사항의 인계에 있어서는 그 발생사유와 처리경위 및 대책을 건별로 명시하여야 한다.

- ②제1항의 과부족 사유가 인계자의 책임일 경우와 과부족 사유를 알면서도 묵인하였을 경우에는 인계자는 변상 책임이 있는 자와 연 대하여 책임을 진다.
- ③부서장 아닌 직원은 근무상 변동 발생 시 부서장이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 관련 문서를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 식으로 부서장에 이관한다. <개정 2020.9.24.>
- 제7조(인수자의 책임) ①인수자는 인계인수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 후에 변상 또는 결손처분 등 책임소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9.24.>
 - ②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후일 문제가 된 경우에는 인수자 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
- 제8조(입회자) <삭제 2020.9.24>
- 제9조(확인자의 책임) 확인자는 업무의 인계·인수가 이 지침에 의하여 명확히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인계인수 시에 발견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. <개정 2020.9.24.>
- 제10조(벌칙) 업무 인계·인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.

- 1. 인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계인수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제점이 있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
- 2. 인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확인자에게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공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
- 3. 상당한 이유 없이 업무 인계·인수를 기피한 경우
- 제11조(업무편람의 작성·활용) ①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·전문화 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.
 - ②제1항에 의한 업무편람을 작성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제규정상 최하 단위 부서별로 작성하며, 처리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한다.
 - ③업무편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며, 업무를 인계 •인수할 때 함께 인계 • 인수한다.
 - 1. 업무 연혁, 관련 업무 현황 및 주요 업무계획
 - 2. 업무의 처리절차 및 흐름도
 - 3. 소관 보존문서 현황
 - 4.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참고사항

[본조 신설 2020.9.24]

제12조(적용범위) ①이 지침은 부서 간의 업무분장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인계·인수의 경우에도 준용한다. <개정 2020.9.24.>

- ②업무 인계·인수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. <개정 2020.9.24.>
- ③업무 인계·인수에 관하여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지시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20.9.24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20.9.24.>

이 지침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1-1)<삭제 2020.9.24>

(별지 1)<개정 2020.9.24.>

인계인수서

업무인수·인계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 국(실) 팀 담당업무 일체, 인 계인수하였고 이를 확인함.

- 1. 업무현황
 - 가.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
 - 나. 현안사항 및 문제점
 - 다. 주요 미결사항
- 2. 인원현황
- 3. 직원(개인별)업무분장표
- 4. 기타 필요한 사항(부속 서류 및 고정자산 목록 등)
- ※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담당 업무의 실정이나 인계·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

(별지 2)<개정 2020.9.24.>

확인자

구분	인 계 자			<u>확 인 자</u>				
본사	실	· 국	장	주	무	본	부	장
	팀	장 / 파 트	장	실	•		국	장
지사	지	사	장	주	무	본	부	장
	팀	장 / 파 트 장 / 지 소	장	지		사		장